## 3. 사건의 접수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제출되면 접수공무원은 표지를 붙여 사건기록을 편성하고,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여 사건을 특정하며, 헌법소원사건부에 이를 기재하여 사건을 등록한다(접수내규 제6조). 이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헌마',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헌바'의 사건부호가 부여된다.